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규정에 의거 경력직 지방공무원은 정년퇴직 일전 공로연수가 가능하나,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근무상한연령이 있는 별정직 공무원은 공로연수 실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을 앞둔 별정직 공무원에게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주기위한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특별휴가의 조정(안 제24조 제12항 신설)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의 규정에 근무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준비 휴가근거 조항 신설

3. 개정근거 : 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 제7조의3(특별휴가)

4. 조 례 안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생략(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제1항)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8.8.21)
- 다. 신·구 조문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규정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⑪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⑪ (현행과 같음)</p> <p>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규정에 근무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 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명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(특별휴가) ① - ⑪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명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(특별휴가) ① - ⑪ (생략)</p> <p>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규정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	<p>제명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(특별휴가) ① - ⑪ (생략)</p> <p>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7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동 조례 제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